

# 2019년 3월 수원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달팽이어린이집 정기총회 의사록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14시 00분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취미실

[사전행사] 조합원 전체 자기소개

사회 : 놀부(이사장)

[정기총회] (14시 20분)

의장 : 놀부(이사장)

1. 서기선출 : 밀크(교육이사)

2. 정족수 확인

재적인원 50명 중 참석 42명, 위임 8명으로 전원 참석하여 정족수(2/3이상) 되었음을 보고함

- 참석 42명
  - 정시참석 35명
  - 터전아마 4명(제비꽃, 두유, 구름, 요술봉)
  - 지각 3명(달님, 요정, 당근)
- 위임 8명(버찌, 밤하늘, 백곰, 제리, 조개, 바다사자, 왕크, 애벌레)
- 참관 2명(안시안 엄마, 안시안 아빠)

3. 개회 선언 및 현황 보고

- 조합원 현황 보고('19.3.30일 기준)
-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조합활동 계획 보고
- 2019년 노동조건개선위원회 활동 보고
- 2018년 하반기 평가 및 2019년 상반기 계획 보고
  - 교육소위(밀크)
  - 시설소위(왕눈이)
  - 운영소위(구급차)
  - 홍보소위(토마토)
  - 재정소위(아몬드)

#### 4. 의결사항

순번	안건	찬성	반대	기권	결과
1	2018년 재정결산 및 적자분담금 승인	49	-	-	가결
2	2019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조합비 인상 건	49	-	-	가결
3	2019년 예산(안) 승인	49	-	-	가결
4	터전 내 1,2층 화장실 문 슬라이딩 도어 교체	48	1	-	가결
5	2018년 잔여 차등보육료의 기부금 청산	49	-	-	가결

##### ○ 의견(안건 1)

- (동그라미) 2018년 회계의 결산과 적자분담금에 대한 안건을 신규 조합원이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 (이사장) 졸업한 조합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총회 개최일 기준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가구가 의결을 하는 것이 맞음

##### < 추가답변 >

-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정관 제53조),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정관 제25조) 자녀의 연령이 조합에서 정한 상한에 도달하였을 때 조합을 즉각 탈퇴할 수 있으며(운영 규정 제16조) 2019년 2월에 졸업한 조합원은 탈퇴 조합원으로 2019년 3월 개최한 정기 총회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음

※ [붙임] 자문변호사 검토 자료(전년도 조합원의 지위 및 전 회계연도 손실분담금의 처리에 관한 의견)

##### ○ 의견(안건 4)

- (사탕) 아이들이 화장실 슬라이딩 도어를 안에서 잠글 수 있는지
- (시설이사) 어른들의 손 위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예정. 공사는 4/6일 실시함

##### ○ 의견(안건 5)

- (달님) 차등보육료 잔액을 청산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차후 차등보육료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 (재정이사) 차등보육료는 보육료 감액대상 가구의 신청이 들어온 시점부터 가구당 매월 1만원씩 납부하도록 하여 마련하고 남은 기금은 회계연도 내에서 청산하여 해당 기금 0원으로 인수받았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차등보육료를 납부 받아 지급해도 부족하지 않음

## 5. 기타

### ○ 특위, 소위 배정 공지

- (산수유) 모꼬지 특위에 신입조합원이 너무 많은데 신입이 모꼬지에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모꼬지 특위에서 신입 비율을 줄였으면 함
- (이사장) 좋은 의견이며 모꼬지 특위는 조정하겠음
- (이사장) 2019.4.3.(수)까지 특위 및 소위에 대한 의견 제출 바람

## 6. 폐회 선언 (16시 35분)

서명날인 (총회 참석 이사)	이사장	놀부
	운영이사	구급차
	재정이사	아몬드
	시설이사	왕눈이
	홍보이사	토마토
	교육이사	밀크

[붙임] 자문변호사 검토 자료

**法律事務所 上 上 (상 상)**

Law Office Sang Sang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0, 2층 (서초동, 청향빌딩)

전화번호: 537-7484, 팩스: 537-7488

---

수 신 :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일 자 : 2019. 4. 3.

제 목 : 전년도 조합원의 지위 및 전 회계연도 손실분담금의 처리에 관한 의견

검 토 : 김근아 변호사

---

위 제목의 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사안의 쟁점**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공동육아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재원 아동의 성장에 따라 매년 조합원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결산보고 후 손실금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매년 정기총회(2019.3.)에서는 전 회계연도(2018.3.~2019.2)를 결산하여 부족분, 즉 손실분담금을 전년도 조합원들에게 청구하게 되는 바, 전년도 조합원들 중 이미 졸업한 조합원들(이하 '졸업한 조합원'이라 한다)의 경우도 정

기총회 당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조합원이 아니라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손실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의사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2. 관련 규정 - 정관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가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제53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7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3. 졸업한 조합원이 정기총회 당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조합의 탈퇴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 제1항 예고 후 탈퇴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 제716조 제1항에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원 아동의 졸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졸업에 참여함으로써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졸업한 조합원은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탈퇴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출자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졸업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은 이미 졸업한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4.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손실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졸업한 조합원은 전 회계연도에 탈퇴하였고, 조합의 재산상태는 이번 회계연도의 정기총회에서 현존하는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탈퇴하여 조합 지분(출자금)을 정산하는 경우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탈퇴 이후에 정산할 수 있다. 즉, 정기총회 당시 새로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탈퇴하여 현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산!"할 수 있다.

1) 법률용어는 "계산"이 정확한 표현이나, 이해의 편의상 "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이번 정기총회에서 졸업한 조합원에게 부족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은, 탈퇴한 조합원에게 탈퇴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되고, 지분 정산 결과 탈퇴한 조합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은 지분의 정산방법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정관 제57조 제1항에서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탈퇴한 조합원에게 손실분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실금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의 경우 잉여금이 없어 미처분이월금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관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없고,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지분 정산의 방법으로, 현재 조합원에게는 정기총회에서 분담금 납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손실금을 보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3.

변호사 김근아